

[] 하천점용허가
[]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**(변경)신청서**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뒤쪽 참조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 119특수구조단 여의도 수난구조대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94 여의도수난구조대 (전화번호 : 02-3706-1942)		
점용 (행위) 개요	하천의 명칭 한 강		
	점용(행위)위치 행주대교 남단 강서 준설토 임시적치장 내 (면적 : 3,500 m ²)		
	점용(행위)목적 여의도 수난구조대 청사주변 준설공사를 위한 하천부지 사용		
	지구지정현황(하천법제44조)		
	점용(행위)기간 2019 년 5 월 21 일부터 2019 년 6 월 17 일까지 (28 일간)		
변경내용			

「하천법」 제33조제1항(제38조제1항)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(제45조제1항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(제20조제1항)에 따라 위와 같이 ([]하천점용허가 []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)를 (변경)신청합니다.

2019 년 5 월 21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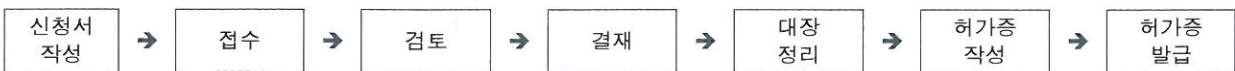
신청인 이 용 선 (서명)

국토교통부장관, 지방국토관리청장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귀하

비고	점용목적은 「하천법」 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 변경내용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.	수수료 없음
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국토교통부, 지방국토관리청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